

■ 산림조합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12. 19.>

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사업의 요건 및 범위(제3조제1항 관련)

1. 요건	가. 기술능력	<p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3명 이상일 것</p> <p>1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</p> <p>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업종묘기사 또는 임업종묘기능사</p> <p>3)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</p> <p>4)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</p>
	나. 자본금	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
	다. 토지	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를 3만제곱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. 이 경우 수종이 5종 이상으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1만주 이상이어야 한다.
2. 범위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</p> <p>가. 산림 안에서 실행하는 사업</p> <p>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</p> <p>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</p>	

비고

1. 기술능력

가.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나.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중의 하나의 기술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.

2. 자본금

가.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.

나.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.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.

다.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